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[별지 제10호서식]

#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 |
|---|---|---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피합병 법인 또는 소멸 법인 | 상호 또는 명칭 | 전화번호 | |
| | 성 명(대 표 자) |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 | |
| | 주 소 | | |
|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| 상호 또는 명칭 | 전화번호 | |
| | 성 명(대 표 자) |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 | |
| | 주 소 | | |
|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| 상호 또는 명칭 | 전화번호 | |
| | 성 명(대 표 자) |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 | |
| | 주 소 | | |
| 합병사유 | | | |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| 구 분 |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|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| |
|---|---|---|---|
| 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 | 1. 합병계약서 사본 1부<br>2. 법인(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,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)의 정관 1부<br>3.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<br>4. 사업계획서 1부<br>5.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| 1. 합병계약서 사본 1부<br>2. 통신망구성도(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) 1부 | 수수료<br>없 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|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| 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